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대통령 궐위 시 선거일 공고 기한 신설 〉

■ 김운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592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윤덕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4. 4.
3. 회 부 일 : 2025. 4.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등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하도록 세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거나 늦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선거에 큰 차질을 가져올 수 있음. 「대한민국헌법」 및 「국회법」이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는 경우 국회의장이 공포하도록 규정하는 있는 점을 참고하여 선거일 공고에 관한 보완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 궐위 등의 선거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4일 이내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선거일을 공고하되, 이때까지 공

고하지 않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및 같은 항 단서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로 하여금 대통령의 권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4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하고,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선거일 공고 기한까지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공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 大統領의 關位로 인한 選舉 또는 再選舉(第3項의 規定에 의한 再選舉를 제외한다. 이하 第2項에서 같다)는 그 選舉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日 이내에 실시하되, 選舉日은 <u>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u> 大統領 또는 大統領權限代行者가 公告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 - ----- ----- ----- ----- -----선거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4일 이내에----- ----- . 다만,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본문에 따른 선거일 공고 기한까지 선거일을 공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공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3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선거일을 공고한다.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대한민국헌법」 제68조제2항과 제71조1)에서 규정하는 ‘궐위’는 대통령 임기 중 직위가 공석이 된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대통령의 사망·사임,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따른 파면, 대통령직 취임 후 피선 자격 상실 및 법원 판결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가 포함됨.²⁾

현행법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이하 ‘궐위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이하 ‘대통령 권한대행’)가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선거일의 미공고 또는 공고 지연 상황에 대한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음.³⁾

과거 선례를 보면,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시행된 두 차례의 궐위선거 모두 실시사유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하고, 확정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 선거를 실시하였음.

《 대통령 궐위선거의 선거일 공고 사례 》

연도	실시사유 확정일	선거일 공고	선거일	비고
2017년	2017.03.10. (헌재 탄핵 인용)	2017.03.15.	2017.05.09.	실시사유 확정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 선거 실시
2025년	2025.04.04. (헌재 탄핵 인용)	2025.04.08.	2025.06.03.	

※ 대통령 직선제 개헌 전 대통령 궐위선거 사례 불포함

1) 「대한민국헌법」

제68조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2) 성낙인, 『헌법학입문』, 법문사, 2011. p.186

3)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 공고 의무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잠재적 가능성이 문제로 제기되었고, 이는 대통령 선거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국정운영에 막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 바 있음.⁴⁾

이에, 개정안은 궐위선거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4일 이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동 기한 내에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그 기한이 지난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규정한바, 이는 선거일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고 시기의 적시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라 선거일이 법정 기한과 절차에 의하여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고될 경우, 선거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여 선거 결과에 대한 수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고,⁵⁾ 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신속한 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통하여 선거관리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개정안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공직선거법」 제35조제1항이 선거일(60일 이내)과 공고 기한(선거일 전 50일까지)을 엄격히 제한하는 강행규정임을 감안할 때, 선거일 결정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법률신문, “최상목 대행, 윤 대통령 파면 후 10일 내 대선일 공고 안하면...‘위헌’”, 2025.03.05.

한겨레, “‘만에 하나’ 한덕수, 대선일 공고 뭉개면? ‘헌제가 막을 수 있다’”, 2025.04.02.

5) 음선필, 「선거의 완전성」 홍익대학교, 2014년, 홍익법학 제15권 제3호(2014) p.119

위원장의 재량은 제약될 수밖에 없어, 개정안의 실질적 효과는 한정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따라서 개정안의 입법화는 선거의 신뢰성 제고와 선거사무의 전문성 및 안정성 강화라는 기대효과, 그리고 선거일 결정 재량권의 제한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궐위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선거일이 조속히 확정되지 않는 경우 선거업무(투·개표소 확보, 재외선거 준비, 유관기관 업무 협조 등)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제안이유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